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4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이수진 · 김우영
주철현 · 민병덕 · 민형배
신정훈 · 양부남 · 김현정
조계원 · 이강일 · 권향엽
최혁진 · 문금주 · 이광희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판결의 정본이나 결정서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고, 소송대리인은 소송행위 뿐 아니라 변제의 수령까지 권한을 가지므로 청구의 목적인 금전 수령에 대한 대리권도 가짐.

따라서 소송대리인이 변제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승소 후 금전의 착복이 가능함.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높음. 실제로 최근 형사보상·국가배상소송의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전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함. 대리인이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, 금

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,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 등).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 중 “자”를 “자(이하 “보상금수령권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,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보상금의 직접 지급 원칙 등) ① 보상금은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으로부터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 “수령대리인”이라 한다)이 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증을 받아 작성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(이하 “지급검찰청”이라 한다)은 수령대리인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사실 및 이를 제출한 수령대리인의 성명
2. 보상금 지급청구의 기초가 된 보상결정서 요지
3. 보상금 지급 시기 및 금액
4.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위한 절차

- ③ 보상금수령권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,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의사를 지급검찰청에 표시한 때에는 지급검찰청은 권리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수령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검찰청은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일자, 지급금액 및 보상금을 수령한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이 조의 통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
- ⑥ 그 밖에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3(종전의 제21조의2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지급검찰청은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이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,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청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

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보상금 지급청구) ① ~ ③ (생 략) ④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<u>자</u> 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하 여 그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. <u><신 설></u>	제21조(보상금 지급청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자(이하 “보상금수령권자”라 한</u> <u>다)-----</u> ----- ----- -----. <u>제21조의2(보상금의 직접 지급</u> <u>원칙 등) ① 보상금은 보상금</u> <u>수령권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</u> <u>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</u> <u>만,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으로부</u> <u>터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위임</u> <u>받은 대리인(이하 이 조에서</u> <u>“수령대리인”이라 한다)이 「공</u> <u>증인법」에 따른 공증을 받아</u> <u>작성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위</u> <u>임장을 첨부하여 보상금의 지</u> <u>급을 청구할 수 있다.</u> <u>②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</u> <u>받은 검찰청(이하 “지급검찰청”</u> <u>이라 한다)은 수령대리인이 급</u>

전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보상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사실 및 이를 제출한 수령대리인의 성명

2. 보상금 지급청구의 기초가 된 보상결정서 요지

3. 보상금 지급 시기 및 금액

4.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위한 절차

③ 보상금수령권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,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 보상금을 수령할 의사를 지급검찰청에 표시한 때에는 지급검찰청은 권리자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수령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검찰청은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에게 보상금 지급 일자, 지급금액 및 보상금을 수령한 수령대리인의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u>제21조의2(보상금 지급기한 등)</u> ① <u>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 ② (생략)	<u>다.</u> ⑤ <u>이 조의 통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</u> ⑥ <u>그 밖에 보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21조의3(보상금 지급기한 등)</u> ① <u>지급검찰청은 보상금수령권자 본인이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, 대리인이 청구한 때에는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